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보고서

1993. 7. 13
行政財務委員會

1. 審査經過

- 가. 提案日字 및 提案者: 1993年 5月 19日 區廳長提出
- 나. 回附日字: 1993年 5月 20日 回附
- 다. 上程日字: 第19回 永登浦區議會(開會中)第1次 委員會(1993年 7月 13日) 上程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地

(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)

가. 提案理由

-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관할 경우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함.

나. 主要內容

- 구민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범위
- 구민회관의 사용료 징수 대상을 규정함
- 구민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정함

3.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姜性熙)

- 가. 1993. 5. 19. 영등포구청장이 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(안)의 내용을 검토한바,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민회관의 시설(강당, 소회의실)과 설비(피아노, 명사기, 조명, 무대, 음향시설 등)를 공공 또는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나. 당초 구민회관의 설치목적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증진과 편의시설제공 및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나 위와같은 공공 또는 공익목적 외의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

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사용허가함이 타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비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서 회관 유지비의 일부나마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,

- 다. 시설 및 설계 사용료의 적정한 액수 산정이 곤란하여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가 정한 사용료의 50%미만 수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는바 그 적정 여부를 예의 검토한후 제정함이 요망됨.

4. 審査結果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1993. 5. 19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를 대관 할 경우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설비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구민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범위(안 제2조)
- 구민회관의 사용료 징수 대상을 규정함(안 제4조)
- 구민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정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
- 나.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(이하 "회관"이라 한다)의 사용료 징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대관범위) 유상으로 회관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1. 기본시설 : 강당, 소회의실
- 2. 부속설비 : 피아노, 조명시설, 무대시설, 음향 시설, 영사기등

제 3 조(대관승인 및 제한) ①회관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일정에 공백이 생긴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.

- 1. 사용자 주소, 성명
- 2. 공연 또는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
- 3. 사용기간 및 시간
- 4. 출연 및 참석 예정 인원수
- 5. 사용시설 및 설비

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.

- 1.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- 2.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
- 3.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

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,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,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1.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
- 2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회관의 사용이 불가할 때
- 3.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- 4.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
제 4 조(사용료 징수대상) ①구민회관의 사용료 징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1.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(이하 공익단체라 칭한

다)이외의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

- 2. 공민단체일지라도 비공익성 행사나 흥행성 공연등으로 사용할시
- 3.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구민을 위한 예식 사용이나 경로행사등 복지 관련 행사 또는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(학술, 예술, 교양, 체련행사등)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제 5 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 ①회관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,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.

- 1. 오전 : 07 : 00부터 12 : 00까지
- 2. 오후 : 12 : 30부터 17 : 30까지
- 3. 야간 : 18 : 00부터 23 : 00까지

②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.

제 6 조(사용료 특례 및 감면) ①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총액의 1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에 따라 구민회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 7 조(사용료 납부 및 반환) ①사용자는 사용승인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.

②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- 1.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
- 2. 국가적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

3. 사용 예정일 5일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하여
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
제 8 조(사용자의 설비) ①사용자가 사용 기간중
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
 승인을 받아야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
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
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
 한다.
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
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
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 9 조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
 회관 및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
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
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
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양도 및 전대의 금지) 이 조례에 의하여
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
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.

제 11 조(입장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
 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
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
 질환이 있는 자
2. 만취자
3. 타인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
 휴대한 자
4.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
 되는 자

제 12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
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·표】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회관 사용료

시설명	구분	단위	사용료 (기준액)	비고
기본 시설	기대강당	좌석당 1회	100원	1. 오전은 기준액의 50%, 오후는 기준액의 70%,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. 2.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%를 가산함.
	소회의장	평당 1회	250원	3.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%로 함. 4.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(철야포함) 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50%로 함.
기타 시설	피아노	1회	10,000원	오전, 오후, 야간 대관중 1회 사용료임.
	영화촬영	1시간	10,000원	1.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.
	무대조명	1시간	20,000원	2. 무료입장 행사 및 순수음악 연주시의 조명시설 사용료는 기준액의 50%로 함
	무대	1회	10,000원	
	음향	1회	10,000원	
	영상기	1시간	10,000원	

※ 1회 사용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, 기준시간초과 30분 이내마다 기준요금에 20%씩 가산한다.